# 전임직운용지침

제정 1995. 9. 1 개정 2013. 3.28 개정 1995. 9.21 개정 2014. 5. 9 개정 1995.11.16 개정 2017. 2.22 개정 1996. 1.12 (명칭개정) 개정 1996. 9. 1 개정 2017.11. 3 개정 1997. 1. 1 개정 2023. 2. 6 개정 1998.12.17 개정 1999. 2. 8 개정 1999. 7.21 개정 2006.10.18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별정직원 중 전임직에게 적용할 채용, 승급 등 별정직 관리요령에서 위임한 사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8, 2017.11.3>

제2조(적용범위) 전임직의 채용, 승급 등에 관하여 별정직 관리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다.<개정 1999.2.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승급 :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의 임명<개정 1999.2.8>
- 2. (삭 제)<개정 1999.2.8>
- 3. (삭 제)<개정 1999.7.21>
- 4. (삭 제)<개정 1999.7.21>
- 5. (삭 제)<개정 1999.7.21>

#### 제 2 장 채 용

제4조(채용원칙) 전임직은 표준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경쟁적 전형방법에 의하여 채용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3.3.28, 2017.11.3>

- 1. 인사규정 제4조에 의한 경우
- 2.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쟁적 전형방법이 불가능 할 때
- 3. 긴급충원을 요할 때

**제5조(채용등급)** 전임직의 초임등급은 별정직관리요령에 의한다.<개정 1999.7.21, 2006.10.18, 2013.3.28, 2017.11.3>

제6조(등급) (삭 제)<개정 1999.7.21>

1. (삭 제)<개정 1999.7.21>

2. (삭 제)<개정 1999.7.21>

**제7조(결격사유)** (삭 제)<개정 1998.12.17>

제8조(채용 및 전형절차) 채용은 서류, 필기 및 면접의 경쟁적 전형을 통하여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전형을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세부 채용기준은 채용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10.18, 2013.3.28>

제9조(정위) 전임직의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11.3>

### 제 3 장 승 급

제10조(정기승급) 전임직의 승급은 매년 3월 1일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9.2.8, 2017.11.3> 제11조(승급원칙) ① 전임직의 승급은 근무성적평정, 경력점수,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99.2.8, 2006.10.18, 2017.11.3>

② 승급은 최초 12등급에서 1등급으로 순차적으로 행하되, 시설환경 직렬 중 청소 및 경비 직무는 승급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1999.7.21, 2006.10.18, 2013.3.28, 2017.11.3>

- ③ 승급은 각 등급별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10.18>
- ④ 각 등급별 직하위 등급의 인원이 각 해당등급의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각 해당등급의 정원에 달할 때까지 각 등급에서 직상위 등급으로 승급 및 직상위 등급에서 차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은 시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10.18>

제12조(등급별 정원) ① 전임직의 등급별 정원은 직하위 등급 인원의 30%로 하며, 분포율에 따른 인원계산 시 1명 미만은 1명으로 본다. 단, 5등급 이하에서는 등급별 정원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6.10.18, 2013.3.28, 2017.11.3>

- 1. (삭 제)<개정 2006.10.18>
- 2. (삭 제)<개정 2006.10.18>
- ② (삭 제)<개정 1999.2.8)

제13조(승진예정인원) (삭 제)<개정 1999.2.8>

제14조(숭진심사위원회 구성) (삭 제)<개정 1999.2.8>

- **제15조(승급대상)** ① 전임직의 승급대상은 당해 등급에서 각각 3년 이상 근무하고, 인사규정 제27조의 승급 제한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9.2.8, 2017.11.3>
- ② 제1항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강등처분기간, 정직기간, 무보직기간(인사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경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휴직기간, 공상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고용휴직기간은 이를 포함한다.<신설 2006.10.18, 개정 2013.3.28, 2014.5.9>
- 제16조(승급방법) ① 전임직 4등급 이상으로의 승급은 등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의 승급 대상자에 대하여 승급후보자명부 평가에 의한 순위를 기준으로 인사담당임원이 결정하며, 승급후보자명부 평가에 있어서 2인 이상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경력점수, 자격증점수 순으로 선순위를 결정한다.<개정 1999.2.8, 2006.10.18, 2013.3.28, 2017.11.3>
- ② 전임직 5등급까지의 승급은 제15조의 승급대상자에 대하여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균이 "미"이상

인 자를 대상으로 인사담당임원이 결정한다.<개정 2006.10.18, 2013.3.28, 2017.11.3>

제16조의 2(승급제한) (삭 제)<개정 1999.2.8>

제17조(승급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제15조의 승급대상자에 대한 승급후보자명부는 매년 2월말을 기준하여 인사담당부서장이 작성한다.<개정 1999.2.8>

② 전임직 승급후보자명부 평가요소는 별표1과 같다.<개정 1999.2.8, 2013.3.28, 2017.11.3>

**제18조(요소별 점수계산)** (삭 제)<개정 2013.3.28>

제19조(근무성적평정) ① 전임직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인사평정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8, 2017.2.22, 2017.11.3>

- ② 전임직의 근무성적평정은 업적 및 역량평정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환경 직렬 중 청소 및 경비 직무는 역량평정(지원군 적용)만 실시한다.<개정 2013.3.28, 2017.2.22, 2017.11.3 >
- ③ (삭 제)<개정 2017.2.22.>

제20조(사적이해관계자) 주관부서 임직원이 전임직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들과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신설 2023.2.6>

부 칙

이 지침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지침은 199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98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은 개정 전의 평정방식으로 행하며, 근무성적을 적용하는 경우 (4-1)-3

(승급)로서, 개정 전 방식으로 평정된 근무성적평정점수는 개정 후 도입되는 방식으로 평정된 근무성적 평정점수와 같이 동일하게 인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9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일 현재 재직중인 상용원 5등급 직원의 4등급으로의 승급은 개정전 지침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 1. 업적평정은 2014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 2. 2013.5.1부로 무기계약직에서 상용원 9등급으로 환직된 자 중 2010.6.1 입사자는 2014.3.1부로, 2011.4.1 입사자와 2011.11.28 입사자는 2015.3.1부로, 2012.5.29 입사자는 2016.3.1부로 상용원 8등급으로 승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승급후보자명부 평가요소 및 배점

<개정 2013.3.28>

평가요소	배점	비고	
경력점수	20	기본경력:5점, 초과경력:15점	
근무성적	70	최근 2년간 근무성적 적용	
자 격 증	10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해 적용	
계	100		

- 1. 경력점수 계산 시 기본경력은 승급소요 최저연수로 하고, 초과경력 산정은 배점한도(15점) 내에서 기본경력 초과시 1월당 0.25점을 곱하여 산정하며, 월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 2. 근무성적은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균에 0.7을 곱하여 얻은 점수로 한다. 단,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시기의 전등급 평균성적을 적용한다.
- 3. 자격증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술	사무	점수
자격종류	산업기사 이상	인터넷정보관리사 및 컴퓨터활용능력 각 1급, 워드프로세서	10
	기능사	인터넷정보관리사 및 컴퓨터활용능력 각 2급	5

- ※ 자격증 다수 보유 시 상위점수 1개의 자격증만 적용
- ※ 기술분야의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상 다음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종목 적용
  - 기계, 전기, 전자, 통신, 화공 및 세라믹, 토목, 건축, 정보처리, 환경, 에너지, 안전관리, 금속, 산업응용(품질관리, 공정관리 분야에 한함)